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89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이종배·강선영·서천호

김성원 · 엄태영 · 박대출

윤영석 • 조승환 • 박덕흠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근 도시와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및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이렇듯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오히려 인근 지역의 침체를 야기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 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 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3조의2(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 ①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라한다)와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건설청장은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구·기업 수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③ 건설청장은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은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 ⑤ 국가는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과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주기, 대상 및 방법 등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3조의2(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① 건설청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인접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인접광역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와의 상
	생발전 등을 위하여 인접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이하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인접광역지방자
	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업 수 및 고용 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
	<u>다.</u>
	③ 건설청장은 인접광역지방자
	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인접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

- 의하여야 한다.
- ④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 사업은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시행한다.
- ⑤ 국가는 인접광역지방자치단 체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인접광역지방 자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과 제2항에 따른 영향 평가의 주기, 대상 및 방법 등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